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292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
“2019년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형,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”
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[보급사업 개요]

1. 지원대상 : 서울특별시중구 소재 주택건물에 서울특별시 주택형,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무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여 생산전력을 자가용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주민

구 분	신청 자격
단독·공동주택	○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, 입주자 대표
건 물	○ 서울특별시중구 소재 건물 소유자

※ 국가·지자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,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, 영향평가, 발전사업은 제외

※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

2. 사업규모 : 설치 개소 당 60만원 지원(선착순 10개소)

3. 지원기준

구 분		지원단가	비고
주택형 일반	1kW 이상~ 3kW 이하	60만원/개소	○ 총 사업비 상한제 : 560만원
건물형 일반	3kW 이상		

※ 보급사업 세부 내역

○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(560만원)

- 적용대상 : 주택형 일반
- 추진내용 :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사업 미승인(신청불가)

○ 주택형(1kW 이상 ~ 3kW 이하)

-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(유치원) 등 보육시설, 경로당(민간), 공동주택 관리동
1kW ~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
-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(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)
-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

○ 건물형(3kW 이상)

-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

4. 지원기간 : '19.4. ~ '19. 11. 29.(선착순 접수, 예산소진 시 종료)

5. 지원절차

- 추진절차 : 신청(주민) → 설치(보급업체) → 보조금 지급(구)
- 보조금 신청(업체 → 서울특별시중구청 환경과) : 매월 초

※ 단,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,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

6. 보급업체 및 제품 : 총26개 업체(붙임 1 참조)

- 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(2019.4.1.)에 의하며, 이후 보급업체 및 제품 추가·변경 시 서울특별시 추가 공고에 따름

7. 제출서류

주택형·건물형	
[설치 전] : 별지 제1호 서식	[설치 후] : 별지 제2호 서식
- 보급사업 신청서, 설치계획서, 표준설치계약서 - 신청자 확인서, 안내 확인서, - 건축물대장, 구조안전검토서·개발행위 허가증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(개인), 법인인감증명서(법인) - 건물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	- 보조금 신청서, 설치확인서, 현장점검표 -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사용전검사 확인서, 개발행위 준공필증 - 하자이행보증서(5년) -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

8. 기타사항

- 지원규모는 예산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급업체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
- 사업승인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
-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-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·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중구청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,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
- 보급업체는 신청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(5년)동안 성실한 하자보증 및 5년 동안 연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
- 보급업체는 용량,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(별지 서식 참고)

- 서울특별시 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(별지 제3호 서식)
- 이전·폐기 비용은 소유자 부담
-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,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설치시 ‘서울시 건축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’【서울시공고 제 2016-2475(2016.12.29.)】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
- 설치를 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

별지 1. 별지 서식(제1호 ~ 제3호) 각 1부

붙임 1. 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1부. 끝.